Ⅰ 요양서비스와 요양보험

1. 장기요양서비스와 보험의 필요성 및 개념

가. 필요성

○ 고령층의 질병 및 건강 악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보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

-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증가하는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보험연구원은 요양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작성함

- ① 장기요양서비스 및 간병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 ② 보험산업의 장기요양서비스(요양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함
-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이고 단기적 수익 창출 측면보다는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장기적, 파생적 수익[1]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나. 개념

○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1) 파생적 수익이란 요양서비스 수행에 따른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간병보험 등 관련 보험판매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로 정의할 수 있음

• (요양 vs. 의료/장애복지)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 혹은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제공되는 의료 및 장애복지서비스와 구분됨

○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며,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에서는 조세 혹은 강제 보험방식[2]으로, 사적부문에서는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됨

• (요양보험 vs. 간병보험) 일반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이라 함)이 있으며, 임의 적용되는 사보험인 간병보험이 있음

〈표 Ⅰ-1〉 요양보험과 간병보험 비교

구분	요양보험(공적보험)	간병보험(민영보험)
근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험업법
도입시기	'08. 7	'03. 8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가입의무	있음(강제 가입)	없음(임의 가입)
가입대상	건강보험가입자(전 국민)	개별 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인수기준을 충족하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알츠하이머 등)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활동불능 진단 등 약관상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지급사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서비스 수급 시 지급	약관상 지급사유 발생 시 (주된 지급사유 유형은 3가지)
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시금(진단자금) 또는 연금(요양자금) 형태로 정액지급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7. 4), "노후 대비 '간병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업데이트 함

2. 요양보험(서비스)의 수급자 현황

○ 우리나라는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음

• 실질적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서비스 미신청자,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 등)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는 요양보험 수급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73만 2천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9.1%이며, 이러한 비율은 2013년 6.5%에 비하면 6년 동안 2.6%p 증가함

2)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나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은 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음(김민경 외 2017)

• (수급자 증가율)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19년 12.9%로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 → 4.9%)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수급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Ⅰ-2〉 연도별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5세 이상 인구(A)	6,193	6,463	6,775	6,996	7,356	7,650	8,027	8,496
노인인구 증가율		(4.4)	(4.8)	(3.3)	(5.2)	(4.0)	(4.9)	(5.8)
급여이용 수급자(B)	400	434	475	520	579	649	732	807
수급자 증가율		(8.5)	(9.4)	(9.5)	(11.3)	(12.1)	(12.9)	(10.2)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B/A)	6.5	(6.7)	(7.0)	(7.4)	(7.9)	(8.5)	(9.1)	(9.5)

자료: 연령별·자격별·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kosis.kr); 행정안전부(mois.go.kr)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참고함